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농림부고시 제2003-14호, 2003.3.28)

닭고기 등급판정기준 발췌

등급기술부 평가팀장 이 원 복

제11조(닭도체의 등급판정)

- ① 닭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닭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을 함에 있어 개체포장용 닭도체는 전수 판정방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표본수 판정방법을 적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판정 방법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전수 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닭도체를 한마리씩 개체별로 등급판정
 2. 표본수 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닭도체를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
-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본수 판정방법에서 롯트의 크기에 따른 표본수는 별표8과 같다.

제12조(닭도체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 ① 닭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9와 같다.
- ② 닭도체의 품질등급은 별표10과 같다.
- ③ 닭도체등급판정의 결과는 포장되는 절단육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표시 및 그 절차는 도체의 경우와 같다.
- ④ 등급판정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 신청된 닭도체에 대하여 표본수등급판정을 실시할 경우 별표9의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C급미만의 닭도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등급판정을 거부하고 도축장경영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닭도체의 중량규격 기준)

- ① 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별표11과 같이 구분한다.
- ② 등급판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을 확인하고,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추출된 닭도체에 대하여 해당 중량범위에 2%이상 미달되는 닭도체의 수를 조사한다.
- ③ 등급판정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중량범위를 2%이상 미달되는 닭도체의 수가 표본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분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제14조(닭도체 등급의 재판정)

- ① 도축장경영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이 거부되거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닭도체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급판정사는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데에 대해서는 별표8의 규정에 의한 표본수 보다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할 수 있다.

제15조(닭도체의 등급표시)

- ① 닭도체의 품질등급 표시방법은 별표10에 따른다.
-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량규격은 호수와 중량범위를 함께 표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 및 중량규격은 부도8과 같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표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벌크포장의 개수에 따른 표본수 (제11조제4항관련)

(단위 : 상자)

벌크포장 개수	표본수
1 ~ 4	모두
5 ~ 50	4
51 ~ 100	5
101 ~ 200	6
201 ~ 400	7
401 ~ 600	8
601개 이상은 매 100난위 증가시	* 추가





[별표 9]

닭도체 품질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항목	품 질 기 준					
	A급		B급		C급	
외 관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굽지 않고 좋은 외형과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의해 도체외관의 손상이 없는 것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휘거나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의해 도체외관의 손상이 약간 있는 것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휘거나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의해 도체외관의 손상이 많이 있는 것	
살붙임	충분한 착육성을 지니며 특히 가슴과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 잘 된 것		보통의 착육성을 지니며 특히 가슴과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 보통인 것		빈약한 착육성을 지니며 가슴과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 적은 것	
지방부착	피부의 지방층이 매우 잘 발달된 것		피부의 지방층이 충분히 발달된 것		피부의 지방층이 빈약한 것	
잔털, 깃털	깃털은 아래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안되며 약간의 잔털이 있다. -길이 1cm 이하의 깃털 2개 이하		깃털은 아래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안되며 잔털이 일부분만 퍼져 있다. -길이 1cm 이하의 깃털 4개 이하		깃털은 아래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안되며 잔털이 넓게 고루 퍼져 있다. -길이 1cm 이하의 깃털 6개 이하	
신선도	피부색이 좋고 광택이 있으며 육질의 탄력성이 있다.		피부색, 광택 및 육질의 탄력성이 보통이다.		피부색이 불량하고 광택이 없으며 육질의 탄력성도 없다.	
외 상	피부가 상처로 인해 노출된 살이 가슴과 다리부위에는 없어야 하고, 기타 부위는 노출된 살의 총면적의 지름이 2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피부가 상처로 인해 노출된 살이 가슴과 다리부위에는 없어야 하고, 기타 부위는 노출된 살의 총면적의 지름이 4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피부가 상처로 인해 노출된 살이 총면적의 지름이 가슴과 다리부위는 2cm, 기타부위는 6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변 색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 허용하나 색이 분명한 것은 총면적에 대해 장축의 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 허용하나 색이 분명한 것은 총면적에 대해 장축의 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 허용하나 색이 분명한 것은 총면적에 대해 장축의 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량규격	가슴과 다리부위	기타부위	가슴과 다리부위	기타부위	가슴과 다리부위	기타부위
13호이하	1.5cm	3cm	2.5cm	5cm	3.5cm	7cm
13호이상	2.5cm	4cm	4cm	6cm	6cm	8cm
	상처로 인한 응혈이 있어서는 안된다					
뼈의 상태	골절 및 탈골된 것이 없어야 한다. 없음		골절된 것이 없어야 하고, 1개의 탈골된 뼈는 허용한다		1개이하의 골절 및 2개이하의 탈골은 허용한다.	
이물질 부착	이상취 없음		없음		없음	
냄새			이상취 없음		이상취 없음	
도체처리	머리와 다리의 부류관찰 부위 및 허파, 식도, 기도, 오래주머니 등의 내장이 제거되고 위 내용물, 분변, 혈액, 담즙에 의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별표 10]

닭도체 품질등급 부여방법 (제12조 제2항 관련)

(1) 전수등급판정

항목	품질평가 결과
1등급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A급 이상이어야 함
2등급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B급 이상이어야 함
3등급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C급 이상이어야 함

(2) 표본수등급판정

표본 닭도체의 품질평가 결과의 구성비율에 따라 신청물량 전체에 품질등급을 부여한다.

〈 표본 닭도체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방법 〉

항목	품질평가 결과
1등급	A급의 것이 90%이상이고 C급의 것이 5%이하이어야 함(나머지는 B급)
2등급	B급 이상의 것이 90%이상인 경우(나머지는 C급)
3등급	B급 이상의 것이 90%미만인 경우

[별표 11]

닭도체 호수별 중량범위 (제13조제1항관련)

(단위 g/마리)

구분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중량 범위	451 ~ 550	551 ~ 650	651 ~ 750	751 ~ 850	851 ~ 950	951 ~ 1,050	1,051 ~ 1,150	1,151 ~ 1,250	1,251 ~ 1,350	1,351 ~ 1,450	1,451 ~ 1,550	1,551 ~ 1,650	1,651 이상

[부노 8]

닭도체의 등급표시 예시 (제15조제3항관련)

(가) 속포장용기

	품질등급	중량규격
가금류 도축장 자체 디자인		15호 (1,451g~1,550g)
가금류 도축장 명칭: 주소:	축산물등급판정사: 등급판정일:	

(나) 겉포장용기

